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신설 등〉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19.
3. 회부연월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도로교통법」상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②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들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제16조에서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노면전차 전용차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면전차와 관련한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노면전차 차로의 종류 >



1)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018년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18. 3. 27. 공포) 시에도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노면전차 도입 초기부터 혼용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운전자들의 혼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우선 초기에는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추후 필요시 보완 입법하기로 결정²⁾한 바 있으며, 아직 국내에는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고, 혼용차로 운영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만, 현재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노면전차 혼용차로가 설치·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필요성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

2) “도시철도법”에는 혼용차로 규정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혼용차로 규정은 일단 제외하고 개정하기로 관계기관(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